

접 수	의안과 - (2019. 08. 04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 법률개정
청원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 년 8 월 4 일

청 원 인

성 명 : 박서진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인 소개 의 원 : 박서진 (인) 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명 : 박서진
건명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 법률개정 청원안
소개년월일	2019년 8월 4 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박서진 외에 14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7회 정기회의&청소년국회 의원입니다. 제17회 정기회의&청소년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대외무역법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안>입니다.</p> <p>현재 우리나라 수입 품목에서 일부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9년도 수입건수 통계를 보면 미국 한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또한 수입의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장비 수입률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경우 수입의존도를 낮추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관한 법률 (제 39조 9항의 신설)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p> <p>㉠국가주도사업의 한 품목에 대한 소수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무역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로 의논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수입량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일본 무역 전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항목을 정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품목의 높은 의존도는 다양한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여러 기업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재화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자국 산업의 생산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품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소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전체적인 내수 경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불화수소의 많은 양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를 향한 경제 보복으로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에 대한 규제를 진행함으로써 지난달 삼성의 불화수소 수입량이 없어 반도체 수출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설하는 조항에서 규제하는 대상을 국가주도사업과 관련한 부분만 한정하는 이유는, 기업마다 기술력이나 사회적 여건과 같은 차이가 있어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일정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주도사업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현행 대외무역법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 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이해 당사국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④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 ⑤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 기간은 4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잠정 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적용 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시행되거나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지날 것
 2. 수입수량제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안에 그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또는 긴급관세의 부과가 2회 이내일 것
- ⑨국가주도사업의 한 품목에 대한 소수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수입량과 수입 제한 기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중략>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잠정 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적용 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시행되 	<p>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 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거나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지날 것

2. 수입수량제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안에 그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또는 긴급관세의 부과가 2회 이내일 것

<중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해당국가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⑤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 기간은 4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중략>

<신설조항>

⑨국가주도사업의 한 품목에 대한 소수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수입량과 수입 제한기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한 품목의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가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감소시켜 국민의 소비 활동의 폭이 넓어짐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만약 국가주도사업을 넘어서 민간 기업의 사업에서도 수입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모든 품목과 관련해 경제적인 안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측면에선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수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역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 상 소수 국가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되면 경제가 쉽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원인 성명 : 박서진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